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1. 6. 9.  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
-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6명(원종진, 이신자, 김기열, 윤권근, 안대국)
- 발의일자: 2021. 5. 20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9.)

### 2. 제안이유

-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을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3조)
-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입법평가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6조)
- 입법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~ 제9조)
-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입법평가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11조 ~ 제12조)

## **4. 참고사항**

-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5. 20. ~ 2021. 5. 31.)결과: 의견 없음

## **5. 검토의견**

-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최근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,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
- 다만,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행정 전 분야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## **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**

- 구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,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자유로 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있으나,

-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중에 구의원이 있고, 빠른 사회변화와 늘어나는 조례 건수를 보건데, 4년에 한번 정도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